

대구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4가단10777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4. 24.

판결 선고 2024. 6. 19.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5.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인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D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대위변제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D이 2017. 9. 29.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1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D 사이의 사업권 양도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명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증채무금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진희